

의안번호	2216666
의 퇴 인	이수진의원
회 답 일	2026. 3. 23.
추 계 번호	26B0830
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국가는 분류식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2	안 제4조의2(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)	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(이하 “지방환경관서의 장”이라 한다)은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 운영·관리에 관한 <u>10년</u> 단위의 계획(이하 “유역하수도정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함(제1항)	
3	안 제5조(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)	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,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 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<u>10년</u> 단위의 기본계획(이하 “하수도정비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함. 이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도시·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함(제1항)	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4조의2(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)	
3	제5조(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)	

2. 상세 사유

가.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 지원(안 제3항)

- 개정안은 국가가 분류식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임
 -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「하수도법」 제63조¹⁾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「하수관로 신설 및 분류식화(자율)」 사업을 통해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(2026년 예산 1조 713억 7,300만원), 한국환경공단에서는 ‘노후하수관로 기술지원단’을 통해 하수도 정비 및 신설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음
 - 개정안이 시행되어 분류식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이 확대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는 분류식하수관로 비중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관련 기준 및 지원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
나. 유역하수도정비계획·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단축(안 제4조의2 및 제5조)

- 개정안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임
 -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현행 「하수도법」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20년이며, 2026년 3월 기준 29개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160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·운영 중임

1) 제63조(국고보조)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·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.

- 한편, 현행법 제4조의2제6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²⁾
- 개정안이 시행되어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단축될 경우,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횟수 증가 등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일례로, 2025년 한강분류 단위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·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11억 6,380만원, 안동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·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18억 2,670만원이 각각 소요됨

[표 1]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용역명	수행기관	수행기간	계약금액
유역하수도 정비계획	한강분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	(주)삼안	2025.7.~ 2026.11.	1,164
하수도정비 기본계획	안동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(변경) 수립 용역	(주)케이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	2025.11. ~2026.3.	1,827

- 다만,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은 각 유역별 규모·유량 등의 환경여건과 하수도 시설의 노후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해당 정보들을 알 수 없어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III. 부대의견

- 없음

2) 제4조의2(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)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.
제6조(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.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nabo.go.kr